



AgEcon SEARCH
RESEARCH IN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No endorsement of AgEcon Search or its fundraising activities by the author(s) of the following work or their employer(s) is intended or implied.

19세기 후반 湖南의 農形과 給災

정 승 진*

Key words: 農形(Harvesting situation), 災實分等(Harvesting evaluation),
給災結(Tax exemption area), 農業危機(Agriculture crisis)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of a recent economic history, that is, long-term economic change, this essay is a case study to analyze focused on concretely agricultural circumstances of Honam province that is the bread basket of the country. In the long run perspective view point, the latter half of 19C the Homan shore region comprised Naju-kun and Yungkwang-kun is an agriculture crisis, rural instability. As time goes from the first half year to the second year in 19C, the number of the region recorded a year of famine have increased. Most of them is a coastal plain land. The offi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coped with the lean year in devastated district by tax exemption ; the fact of increasing scale of the tax exemption area verified the crisis of those areas. The situation of raising the scale of devastated districts by bad harvesting, especially it occurred to many times between 1876 a bad year and 1894 breaking out a peasants' uprising. The case study shows a surprising fact that the agriculture crisis in Chunra-Do(全羅道) grasp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orrespond with the harvesting register(秋收記) recorded by certain landlord in Yungkwang-kun.

1. 장기사회변동의 시각 - 문제의식
2. 19세기 호남 諸邑의 農形 추이

3. 19세기 후반 호남 제읍의 給災 실태
4. 호남 제읍의 농촌 불안정: 결론에 대신하여

1. 장기사회변동의 시각 - 문제의식

최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다량의 고문

서가 발굴되면서 이 지역의 장기사회변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전라도 靈巖, 海南, 靈光 등지에서 보고된 米價와 地主制에 대한 장기 시계열 통계는 조선후기 이래 일제하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전임강사

를 아우르는 한국 근대전환기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하는 귀중한 성과들이다. 여기서는 최근까지 성취된 이 계통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이 글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장기사적 연구는 최근 1990년대 들어 발생한 경제사학의 새로운 경향성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지주제와 미가에 관한 장기 시계열자료가 확보되면서 특정 지역을 사례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일찍이 宮島博史¹에 의해 동아시아 小農社會論의 형태로 제기되고 全成昊², 李榮薰³, 鄭勝振⁴, 金建泰⁵ 등에 의해 그 실증작업이 가속적으로 진행된 장기경제변동 연구의 일환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단기 구조분석 내지 거시적 정책·제도 분석에서 장기 동태론적 분석으로 시각의 확대와 관점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장기간의 미가 추이

(1744-1911)가 보고 되었는데, 동 추이는 인근 해남군의 미가 추이(1823-1882)와도 대단히 높은 相關度를 보여주고 있다.⁶ 영암과 해남의 추이가 상당한 동조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호남 沿岸 諸邑에 있어서 미곡시장의 統合度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⁷ 다음에 제시한 <그림 1>은 영암, 해남, 영광 등지에서 최근까지 보고된 미가 및 지대량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영암과 해남의 미가(租價) 추이를 보면, 19세기 중반까지 안정적인 순환변동을 보이다가 영광의 斗落當 地代量(영광 집조)이 하락하는 1860년대 초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19세기 후반의 미가 변동은 18세기 이래 안정적인 중기파동을 고려한다면, 19세기 조선경제가 18세기의 안정기와는 상이한 격동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미가와 두락당 지대량 사이에 연출되는 상관관계이다. 그것은 영암의 미가와 동지역의 지대량 간에 연출되는 역의 상관관계(trade-off relation)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암과 동조성을 띠는 영광의 지대량과 영암의 미가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는 미가가

¹ 宮島博史, 『東アジアの社會經濟』, 『東アジア小農社會の形成』, 溝口雄三外編, 『長期社會變動』(東京大學出版會, 1994).

² 全成昊, 『朝鮮後期 米價史 研究(1725~1875)』, 成均館大博士學位論文, 1998 ; 同, 『18~19세기 조선의 기후, 작황, 가격의 변동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25-2, 2002.

³ 李榮薰, 『호남 고문서에 나타난 장기추세와 중기파동』,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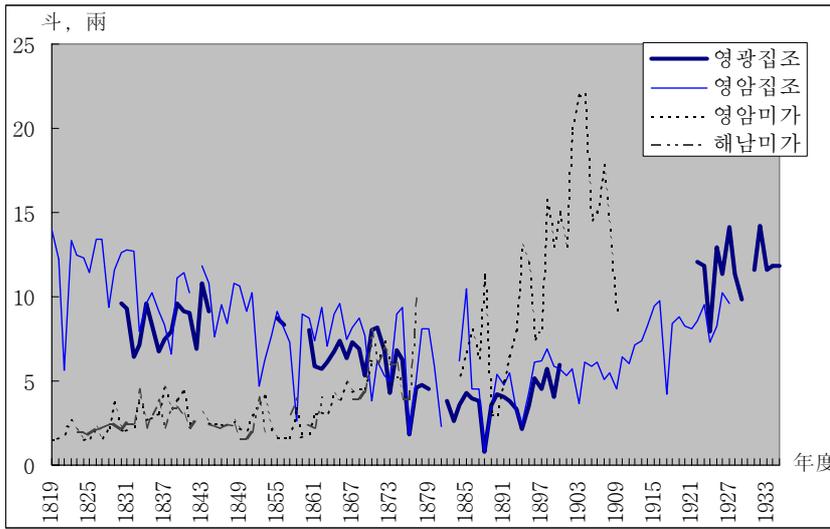
⁴ 鄭勝振, 『19~20世紀前半 農民經營의 變動樣相』, 『經濟史學』 25, 1998 ; 同, 『『靈光郡西部面改量案』의 분석』, 『大東文化研究』 34, 1999 ; 同, 『韓國近世地域經濟史—全羅道 靈光郡 일대의事例—』(景仁文化社, 2003).

⁵ 金建泰, 『1743~1927年 全羅道 南平文氏 門中の 農業經營』, 『大東文化研究』 35, 1999.

⁶ 영암의 미가 추이는 全成昊, 앞의 논문, 1998 참조. 영암의 미가 시계열은 1741~1862년간이지만, 최근 李榮薰에 의해 1911년까지 추가되었다(李榮薰, 앞의 논문, 1999). r (상관계수)=+0.86. 여기서는 구한말의 미가폭등을 고려하여 1894년까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⁷ 李榮薰 朴二澤, 『農村 米穀市場과 全國的 市場 統合: 1713~1937』, 『朝鮮時代史學報』16, 2001 ; 李榮薰 朴二澤, 『19~20世紀 米穀市場의 統合과 分列: 靈巖의 米價變動에 대한 生産衝擊의 影響分析』, 『經濟學研究』 50-2, 2002. 참조.

그림 1 靈光, 靈巖, 海南의 斗落當 地代量 및 米價(租價) 推移



상승함에 따라 지대량이 하락하고 지대량이 하락함에 따라 미가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의 획기가 되는 1860년대 또는 1870년대부터 그러한 경향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미가에 관한 장기시계열 추이는 두락당 지대량의 해석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 지주가 작인에게 경지를 대여하고 그 지대로 받은 두락당 지대량은 단순히 지대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주민란(1862) 이후 농촌불안정에 따라 지주권의 약화를 틈타고 지대울이 하락하고 있음은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지만, 이같은 미가 추이를 고려할 때 지대울의 하락만으로 1860·70년대의 미가 폭등을 모두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경제학적으로 미가의 상승이 미곡의 공급이 감소한 결과라면, 지대울의 감소는 미곡생산의 감소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총생산이 동일하다면,

지대울의 감소만으로 농촌 미곡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미곡 공급의 감소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⁸ 이같은 상황이 영광, 영암, 해남 등 전라우도의 연안부 도착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은 최근의 장기사적 연구의 흐름을 타면서 영광, 영암 등 연안 제읍에서 나타난 국부적 현상이 호남지역에서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검증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당시의 농업상황을 農形과 給災라는 전근대 농업상황을 반영하는 두 지표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두 지표는 중앙 官撰史料 속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당시의 농사사정 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다. 이같은 작업은 지방 古文書에서 산견되는 국부적 현상을 중앙 관찬사료라는 이질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는 연구사적 의의를

⁸ 이상 李榮薰, 『호남 고문서에 나타난 장기추세와 중기파동』, 1999, p.340면 인용.

갖고 있다. 이것은 사례연구의 특수성을 넘어 지대 유형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관점의 확대이기도 하다.

2. 19세기 호남 諸邑의 農形 추이

농형이란 農事 形便의 준말로써 지방관(군수)이 관할 구역의 당해 作況을 조사한 뒤 지방 監營(가령 전주감영)과 중앙 戶曹에 보고한 것이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지방의 작황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하는 敬差官 제도가 폐지되고 田稅 총액제가 일반화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작황을 보고하는 지방관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중요해지고 있었다.⁹

중앙 호조에서는 각 감영에서 보고된 농형을 기초로 하여 면세지[災結]를 許給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세 총액제와 짝을 이루는 給災제도이다. 따라서 농형은 단순히 당해 지역의 작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중앙 정부의 재정 지출을 동반하는, 일종의 과세 표준의 근거로서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일찍이 茶山은 연해 제읍의 ‘己巳甲戌之饑’[1809년, 1814년의 기근]를 목격하면서 농촌의 안정화를 위한 급재와 환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⁰

먼저, 농형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작황은 尤甚, 之次, 稍實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우심”이란 농사가 極

凶을 기록해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고 여기에 民의 流亡이 속출하는 단계이다. 농형이 우심인 경우 당해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 세액의 절반가량, 심할 경우 전액을 면제받는다. “지차”란 우심보다는 덜한 보통 흉년 상태로서 이 경우 세의 일부 가령 1/3~1/4 가량을 탕감받으며 세의 延納, 分納도 인정된다. “초실”은 평년작으로서 세의 탕감은 없다.¹¹ 이렇듯 전근대의 작황 조사는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사정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다음에 제시한 <그림 2>는 19세기 전기 간에 걸쳐 호남 제읍의 농형을 시계열화하여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는 『備邊司謄錄』에 수록된 농형을 지수화하여 그 비중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상 개별 읍의 농형은 불명하다.

19세기 호남지역의 농형은 후반기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형이 “지차”인 읍의 비중이 일정한 가운데, “초실” 읍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심” 읍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19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농형이 “우심”인 해가 연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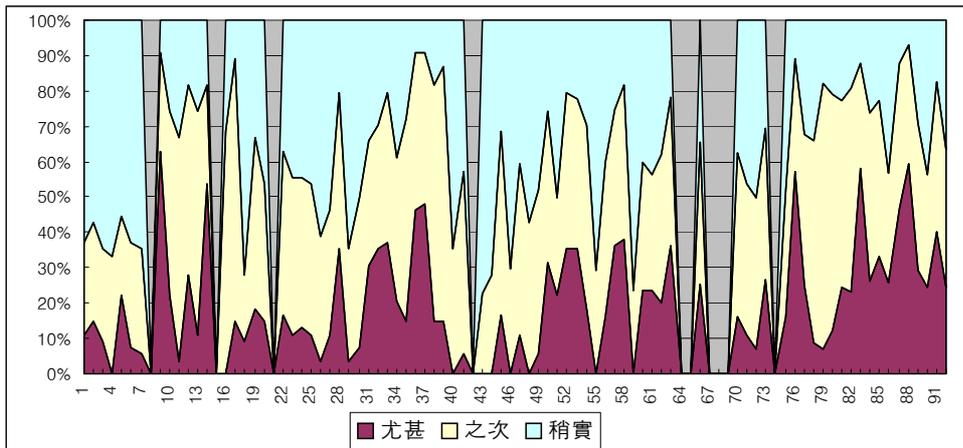
<부표 1>을 통해 19세기 전반 농형이 “우심”인 邑數를 보면(20읍 이상), 1809년 호남 전체 54읍 가운데 34읍, 1814년 29읍, 1833년 20읍, 1836년 25읍, 1837년 26읍 등으로, 극흉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己

⁹ 李哲成, 『18세기 田稅 比摠制의 實施와 그 성격』, 『韓國史研究』 81, 1993.

¹⁰ 『戶典六條』 『譯註牧民心書』, 창작과 비평사.

¹¹ 稍實은 때로 作況이 “之次”보다 덜한 ‘경미한 흉년’을 이르기에도 한다. 『譯註牧民心書』,

그림 2 19세기 湖南 諸邑의 農形 추이, 1801~1892



주 : 수치는 <부표 1> 참조
 자료 : 『備邊司謄錄』

已甲戌之饑[1809년, 1814년의 기근], 1833~34년간의 米暴動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극흥으로 기억되고 있다.¹²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우심” 읍수를 보면, 1857년 20읍(호남 전체 55읍), 1858년 21읍(동 55읍), 1863년 20읍(동 55읍), 1876년 32읍(동 56), 1883년 33읍(동 57읍), 1887년 27읍(동 58읍), 1888년 35읍(동 59읍), 1891년 23읍(동 57읍) 등으로, 흉년의 주기가 19세기 전반보다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876년 ‘丙丁의 극흥’ 이후 1892년 사이에 “우심” 읍은 호남 전체 56읍의 1/3 가량을 접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의 흑심한 기근은 전염병, 유망 등을 초래하면서 이듬해의 잇따른 기근을 부르고 있었다.¹³

19세기 후반에 들어 농형이 자주 “우심”을 기록하면서 結稅 납부실적도 저조해지고 있었다. 진주민란이 있었던 1862년에는 備邊司로부터 각종 세가 오래도록 미납되었다며, 大同米와 結錢을 동년 10월내로 바치면 그간의 延納은 불문에 부치겠다는 승이 내려오고 있다.¹⁴ 호남의 농형이 악화되면서 중앙에서 인정하는 재해지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1876·77년의 극흥 이후 이 지역의 농업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의 <표 1>은 19세기 호남 제읍의 농형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各司謄錄』(『全羅監司啓錄』, 『湖南啓錄』)에 수록된 19세기의 농형을 모두 적출한 것으

¹² 이호철 박근필, 『19세기 초 조선의 기후변동과 농업위기』, 『朝鮮時代史學報』 2, 1997 ; 全成昊, 『朝鮮後期 米價史 研究(1725~1875)』, 成均館大博士學位論文, 1998 참조.

¹³ 趙玼, 『19世紀 民亂의 社會的 背景』(『19世紀

韓國 傳統社會의 變貌와 民衆意識』,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 全成昊, 앞의 논문, 1998 ; 동, 『18~19세기 조선의 기후, 작황, 가격의 변동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25-2, 2002. 참조.

¹⁴ 『備邊司謄錄』, 哲宗 13년 壬戌(1862) 10월.

로 이를 통해 호남 농형의 지역적 특징을 진술한 『備邊司謄錄』의 기록(그림 2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을 증보하는 의의가 있다.

표 1 19世紀 湖南 各邑의 農形 一覽

年度	尤 甚	之 次	稍 實
己丑 (1829,純祖29) 총 54읍	진도, 해남 등 2읍	강진, 영암, 옥구, 무안, 나주, 부안, 함평, 고부, 영광, 임피, 만경, 흥덕, 용안, 함열, 무장, 홍양, 법성 등 17읍	전주, 고산, 진산, 금산, 무주, 운봉, 남원, 용담, 진안, 임실, 순창, 담양, 창평, 동북, 곡성, 구례, 광양, 낙안, 보성, 장흥, 광주, 능주, 남평, 화순, 태인, 금구, 김제 등 35읍
乙巳 (1845,憲宗11) 총 54읍	여산, 용안, 함열, 임피, 옥구, 홍양, 해남, 진도, 전주 등 9읍	부안,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 무안, 광양, 순천, 낙안, 보성, 장흥, 나주, 영암, 금구, 진안, 강진, 운봉, 만경, 남원, 고산, 진산, 금산, 장수, 김제, 고부, 익산 등 28읍	광주, 남평, 능주, 동북, 화순, 순창, 담양, 옥과, 창평, 장성, 임실, 곡성, 구례, 정읍, 태인, 무주, 용담 등 17읍
甲寅 (1854,哲宗5) 총 54읍	순천, 구례, 곡성, 용안, 함열, 옥구, 만경, 김제, 창평, 운봉 등 10읍	고부, 나주, 영광, 무장, 함평, 무안, 해남, 강진, 진도, 전주, 장성, 장흥, 여산, 남원, 보성, 낙안, 익산, 영암, 임피, 금구, 부안, 태인, 흥덕, 고창, 정읍, 홍양, 광양 등 28읍	능주, 광주, 담양, 무주, 순창, 진산, 용담, 임실, 진안, 장수, 옥과, 동북, 화순, 남평, 고산 등 16읍
戊寅 (1878,高宗15) 총 56읍	영광, 부안, 만경, 옥구, 무안 등 5읍	광주, 담양, 남원, 진안, 태인, 금구, 전주, 익산, 여산, 용안, 함열, 임피, 김제, 고부, 정읍, 흥덕, 무장, 함평, 나주, 영암, 강진, 해남, 진도, 장흥, 보성, 홍양, 낙안, 광양, 순천, 법성, 가리포, 청도 등 32읍	금산, 진산, 무주, 용담, 고산, 고창, 남평, 능주, 동북, 화순, 창평, 곡성, 구례, 임실, 장수, 운봉, 순창, 옥과, 장성 등 19읍
丙戌 (1886,高宗23) 총 58읍	나주, 영광, 김제, 강진, 영암, 해남, 진도, 익산, 전주, 홍양, 순천, 부안, 무장, 군산 등 15읍	장흥, 함열, 광양, 낙안, 정읍, 옥구, 함평, 흥덕, 만경, 용안, 무안, 고부, 태인, 금구, 여산, 법성, 성당, 가리포 등 18읍	능주, 임실, 담양, 보성, 진산, 창평, 용담, 진안, 동북, 곡성, 구례, 화순, 남평, 운봉, 장수, 옥과, 고창, 고산, 금산, 광주, 무주, 남원, 장성, 순창, 청산도 등 25읍
丁亥 (1887,高宗24) 총 58읍	홍양, 광양, 진도, 낙안, 영암, 나주, 순천, 해남, 무안, 부안, 김제, 옥구, 만경, 임피, 함열, 용안, 무장, 영광, 운봉, 전주, 강진, 장흥, 함평, 광주 등 27읍	진안, 순창, 화순, 동북, 창평, 진산, 옥과, 금산, 곡성, 구례, 금구, 익산, 고창, 고부, 정읍, 여산, 보성, 담양, 고산, 태인, 흥덕, 임실, 장수, 가리포 등 24읍	장성, 무주, 용담, 능주, 남평, 남원, 거문도 등 7읍
戊子 (1888,高宗25) 총 59읍	무안, 옥구, 김제, 만경, 임피, 고부, 부안, 함평, 나주, 영광, 영암, 홍양, 해남, 진도, 고창, 흥덕, 전주, 광주, 구례, 화순, 금구, 태인, 정읍, 익산, 남평, 창평, 무장, 여산, 함열, 용안 등 35읍	능주, 장성, 강진, 광양, 곡성, 남원, 옥과, 담양, 순창, 임실, 순천, 낙안, 장흥, 보성, 운봉, 동북, 진안, 장수, 고산, 가리포 등 20읍	무주, 용담, 금산, 진산 등 4읍

주: 표 작성 상의 편의를 위해 일부 殘邑은 기록에서 제외하였다(1879년은 생략).

자료: 『各司謄錄』 中 『全羅監司啓錄』 己丑(1829) 10월 11일 ; 『全羅監司啓錄』 乙巳(1845) 10월 12일 ; 『全羅監司啓錄』 甲寅(1854) 10월 7일 ; 『湖南啓錄』 戊寅(1878) 10월 25일 ; 『湖南啓錄』 丙戌(1886) 10월 18일 ; 『全羅監司啓錄』 丁亥(1887) 10월 16일 ; 『全羅監司啓錄』 戊子(1888) 10월 10일.

표 2 19세기 羅州牧 田結과 陳結의 推移

區分	1818년경	1872년경	1895년	1897년
元摠	25,349結 74負	25,557結 98負		19,287結 68負
各樣免稅結	5,120결 77부	5,673결 52부		3,390결 1부
各樣陳雜頭結	5,645결 2부	6,191결 79부	6,382결 99부	6,405결 1부
收稅實結	14,583결 78부	13,692결 67부	10,171결 11부	9,492결 68부

자료: 손병규, 『19세기 나주지역의 재정운영과 권력관계』, 『大東文化研究』 44, 2003(원자료: 『羅州牧邑誌』(1818), 『湖南邑誌』, 『羅州』(1872), 『邑誌』, 『羅州事例』(1895), 『續修羅州誌』(1897)).

19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우심” 읍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이미 <표 1>에서 확인한 바 있다. 여기서 특히 “우심” 읍의 지역적 위치에 주목하면, 나주, 영광, 영암, 부안 등 全羅右道의 巨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남의 거읍들은 주로 평야부 연안 지역에 속하고 있는데,¹⁵ 19세기 전기간에 걸쳐 나주, 영광 등 연안 제읍들은 농형에 있어서 그 경향을 같이 하고 있었다. <표 1>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19세기 후반 가장 극심한 극흥으로 기록된 1876년의 경우 전라우도의 연안 제읍들은 대부분 농형이 “우심”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는 극흥, 전염병, 유망 등으로 인해 연안 읍 전체가 거대한 생존위기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다.¹⁶

1883년 나주 등 연해변을 중심으로 또 한번의 커다란 재해가 내습하여 호남의 농

형은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전라감사는 중앙 호조에 災實分等の 狀啓를 올려 재해지에 대한 결세의 전액 연기와 일부 탕감을 윤택받고 있다. 이 때 전주와 영광 양 읍의 ‘無亡減稅條’는 무려 930結에 이르고 있었다.¹⁷ 특히 재해에 따른 陳田의 발생, 진전에 대한 과세는 이 시기 농업의 커다란 문제거리였는데, 이로 인한 영구 재해지의 면적 청원이 빈출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2>는 호남 최대의 거읍인 나주목의 진전 실태를 제시한 것이다.

나주목의 경우 1818~72년간 量案상 元摠[원장부결수]은 2만 5천여 결로 일정한 가운데, 陳雜頭結이 6천여 결로 약증함으로써 收稅實結은 1만 3천여 결로 약간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1872~97년간에는 원총이 1만 9천여 결로 급감하는 가운데, 진잡탈결은 여전히 6천여결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세실결은 1만 3천여 결에서 9천여 결로 급감하고 있었다. 이렇듯 농형의 악화는 진전을 증가시키면서 수세실결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었다.

¹⁵ 『湖南廳事例』(純祖年間)에 따라 田結에 따른 邑格을 살펴보면, 호남에서 結稅 6천 結 이상의 巨邑은 羅州, 全州, 光州, 南原, 靈光, 靈巖, 順天 순이다.

¹⁶ 왕현중, 『19세기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1894년 농민전쟁연구 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1); 鄭勝振, 『19~20世紀前半 農民經營의 變動樣相』, 『經濟史學』 25, 1998(『韓國近世地域經濟史—全羅道 靈光郡 일대의 事例—』, 景仁文化社, 2003).

¹⁷ 無亡減稅란 민의 流亡으로 無主 陳田이 발생해 결세를 감해주어야 하는 상황을 이른다. 『備邊司謄錄』, 高宗 20년 癸未(1883) 11월 13일.

나주목에서는 흉년이 발생한 1883년부터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893년까지를 “羅擾十年(나요십년)”이라 하여 위기의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¹⁸ 나주와 같은 대규모 결충 감소는 동질적인 농업지대인 영광군에서도 확인된다. 1868년 영광군 西部面에서는 改量田에 즘음해 대규모 頃給(결충의 30%)이 발생함으로써 결충의 1/4 가량이 급감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이 시기 들어 재해에 따른 대규모 진전과 재결에 의한 것이었다.¹⁹

1883년의 흉년에 이어 1888년 또 한 번의 재해가 호남 일대를 내습하고 있었다. 대홍작, 재결의 발생, 그에 따른 세 탕감의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²⁰ 이같은 상황은 1876·77년 丙丁의 歉荒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함으로써 더욱 누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중앙에서는 악화된 농형을 감안해 1890년부터 대규모 陳結에 대한 3년간의 停稅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²¹ 민의 원성을 진정시키기에는 그 재원도 부족하고 시기도 놓치고 있었다. 병정의 겸황 이후 동학농민전쟁기까지의 구체적인 실태는 다음 절의 주요 분석과제이다.

3. 19세기 후반 호남 제읍의 給災 실태

급재는 지방관이 올린 농형[災實分等の狀啓]에 기초해 중앙에서 집행하는 정부지출의 형태이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재정지출이 동반된 것은 아니고 재해를 크게 입은 災結에 대해 그 結數에 따라 면세지를 허급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給災額은 당시 중앙정부의 재정상태 및 지방재정에 제약되고 있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의 <그림 3>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3>은 1801~1885년간 출세실결 및 급재결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19세기 전기간에 걸쳐 출세실결의 추이는 급재결의 편차에 의해 일정한 변동이 보이지만 대체로 20만 결에서 정체적인 양상이다.²² 19세기의 추이는 18세기의 안정적인 추이와는 달리 19세기 전반의 극흥에 의해 변동폭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급재결의 추이는 전절의 농형 추이(그림 2 참조)와는 대조적으로 1876년을 제외하곤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연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전세 총액제에 따라 경직적인 부세정책을 시행

¹⁸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한말 일제하 나주지역의 사회변동 연구: 심포지엄논문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동양학학술회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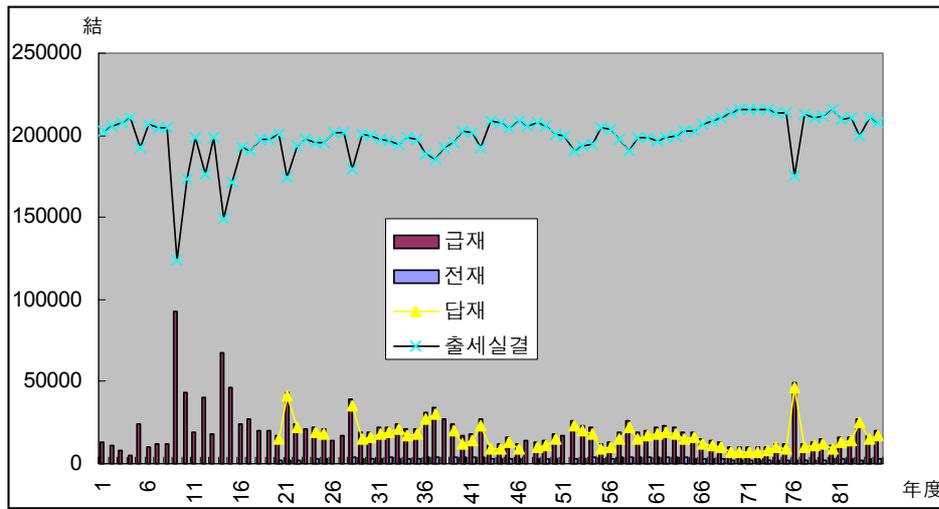
¹⁹ 鄭勝振, 『『靈光郡西部面改量案』의 분석』, 『大東文化研究』 34, 1999(『韓國近世地域經濟史—全羅道 靈光郡 일대의 事例—』, 景仁文化社, 2003).

²⁰ 『備邊司謄錄』, 高宗 26년 己丑(1889) 11월.

²¹ 『高宗實錄』, 高宗 28년 辛卯(1891) 8월 28일,

²² 출세실결 및 급재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元帳付結數 = 時起田 + (陳雜頃田+免稅田),
 (出稅)實結數 = 時起田 - 災結.
 ⇒ 實結 = 元帳付結數 - (陳雜頃田+免稅田) - 災結.
 戶典 6條 제1장 田政 p.182. 戶典 6條 제2장 稅法 p.228. 『譯註牧民心書』, 創作과 批評社, 1979

그림 3 19세기 전라도의 出稅實結果 給災結의 추이, 1801~1885



주 : 수치는 <부표 2> 참조.

자료 : 『度支田賦考』(上)(下)(麻生武龜, 『朝鮮田制考』, 1940, 附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²³ 본질적으로는 19세기 전반의 과도한 급재액에 따라 정작 급재가 위급한 19세기 후반에는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이 고갈되어 추가적인 급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²⁴ 19세기 후반 호남 각 지에서는 지방관의 극홍 호소, 급재 청원, 암행어사의 실태 보고가 잇따르고 있었지만, 호남의 민정을 살피기에는 당시의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있었던 것이다.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는 출세실결 및 급재결의 추이를 당시의 작황과 경제상태로 잠정 추계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의 지방재정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해석이다.

²³ 李哲成, 『18세기 田稅 比摠制의 實施와 그 성격』, 『韓國史研究』 81, 1993.

²⁴ 19세기 후반 지방재정의 위기, 환곡제의 해체 현상에 대해서는 金泰雄, 『開港前後~大韓帝國期の 地方財政改革 研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7 ;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景仁文化社, 2000 ; 송찬섭, 『朝鮮後期 還穀制改革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오히려 <그림 3>의 出稅實結果 給災結의 추이는 전술한 농형 추이(그림 1 참조)를 고려하는 한, 19세기 후반 지방재정의 한계와 그에 따른 경직적인 조세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표 3>은 19세기 후반, 특히 1876-77년 丙丁의 歉荒 이후 호남의 급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자료인 『年分災實要覽』은 1876년부터 1892년까지 17년 동안 전국의 災實分等 내역을 조사해 기록한 것으로, 각 도의 監司 및 留守의 年分狀啓와 그에 따른 처리내용을 전국적 레벨에서 정리한 財政 公簿이다. 특히, 자료의 대상기간을 1876-92년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당시의 다급한 농형과 급재 상황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1876-92년간 호남의 악화된 농형은 중앙

표 3 1876-92年間 湖南 災實分等 一覽

단위: 結

年度	尤甚/全體	災結(a)	加請災結	加給(b)	又給(c)	給災(a+b+c)
1876	32/56	2,500	87,212	45,000	1,500	49,000
1877	14/56	150	41,656	11,769	0	11,919
1878	5/56	100	25,058	3,500	0	3,600
1879	4/56	150	25,202	3,000	1,000	4,150
1880	7/57	0	22,131	0	0	0
1881	14/57	100	28,511	1,000	2,000	3,100
1882	12/52	150	46,911	5,000	0	5,150
1883	33/57	400	80,137	10,000	3,000	13,400
1884	15/57	200	41,483	2,800	0	3,000
1885	19/57	300	51,389	5,000	1,000	6,300
1886	15/58	0	36,547	3,000	0	3,000
1887	27/58	200	54,187	4,000	500	4,700
1888	35/59	2,000	113,988	48,000	4,500	54,500
1889	17/58	200	43,121	7,000	2,000	9,200
1890	14/57	0	29,749	1,400	0	1,400
1891	23/57	0	42,862	6,500	0	6,500
1892	14/57	150	52,999	9,000	2,000	11,150

자료: 『年分災實要覽』(1876-92) (奎12207)

에서 인정한 급재 상황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표 3> 상의 “급재”액(『년분재실요람』)을 <그림 3> 상의 “급재”액(『度支田賦考』)과 비교하면 1876년과 1877년의 수치만이 일치할 뿐, <표 3>의 “급재”액은 과소 계상되어 이것이 당시 급재의 중간과 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표 3>에서는 『탁지전부고』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급재의 보다 선명한 시계열 추이를 엿볼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지방에서 올린 “加請災結”이 중요하다.

먼저 1876년의 경우를 보면, 전라도 총 56읍 가운데 32읍의 농형이 “우심”을 기록해 중앙의 호조에서 인정한 “災結”은 2,500결이었다. 이에 각 읍에서 “加請災結”한 것이 87,212결인데, 중앙에서 이를 심사해

“加給”한 재결이 45,000결이다. 여기에 각 읍에서 재차 청원한 재결을 호조가 다시급 인정해 추가로 “又給”한 결수가 1,500결, 이렇게 해서 1876년의 査定 “給災”액은 49,000결로 결정되었다. 여기서는 편의상 농형이 “之次”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차등을 두고 급재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19세기 후반 가장 극심한 흉년으로 기록되었던 1888년의 경우를 보면, 호남의 59읍 가운데 35읍에서 극흉이 발생해 “가칭재결”은 무려 113,988결에 달하고 있으나 “급재”액은 결국 그 절반가량인 54,500결로 귀결되었다. 이 해의 극흉은 실로 심각하여 이례적으로 “加給”, “又給”에 이어 “三給”까지 급재를 시행하였고 沿岸 諸邑의 諸稅

가 “全數停退”되기에 이르렀다.²⁵ 이제 <표 3>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급제액이 10,000결을 상회했던 1877년, 1883년, 1892년 또

²⁵ 『承政院日記』高宗 25년 戊子(1888) 9월 21일 : 災實分等を 하기도 전에 農形의 惶급함을 아뢰는 狀啓이다. 軍포와 軍전의 全數 停退를 요청하는 위급한 狀面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급 전라감사 李憲植의 狀啓를 보니, 扶安 등 36邑鎭의 農사가 흉년이 된 狀況을 갖추어 進술하고, 각 軍營에 바치는 屯과 木면은 내년 가을까지 납부를 미루어주고, 關西의 城餉米 3만 석을 특별히 割下하되 代소의 백성 중에 의로운 뜻을 발하여 재물을 내서 백성을 구제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의 初仕 자리를 일반적인 格式에 구애받지 말고 순서에 관계없이 뽑아 쓰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 다. 금년에 무덥고 가뭄 재앙이 심한 지방도 있고 덜한 지방도 있는데 災實分等を 하기도 전에 道啓 안에 36읍진을 지적해서 근심스러운 狀況을 아뢰니 民情의 惶급함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 다.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만, 軍수품에 쓰는 屯면과 屯의 전부를 일체 停止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심히 어렵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니, 營남의 전례를 참고하여 병조의 각 營에 바치는 것은 4분의 1의 한도로 대납을 허락하소서.” ; 『承政院日記』高宗 25년 戊子(1888) 11월 14일 : 재해가 극심하여 감사의 狀啓대로 急제가 이 루어지고 있는 狀面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 를, “방급 전라감사 李憲植이 올린 災實分等의 狀啓를 보니, 扶安 등 35邑鎭을 尤甚에 두었 고, 綾州 등 20읍진을 之次에 두었고, 茂朱 등 4읍을 稍實에 두었습니다. 舊 災結 중에 세금 을 停止한 조항 외에 各宗 裁結 11만 3988결 68부 2속을 특별히 다 裁결로 割給해 주고, 뒤에 기록한 여러 조항을 아울러 묘당으로 하 여금 품지하여 分부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 다. 오랜 가뭄으로 재해를 입은 것이 丙子年 [1876]만한 적이 없는데, 金년은 병자년보다도 꽤 심한 점이 있습니 다. … (農形을) 세 등급 으로 나눈 데에는 나뉠대로 헤아린 바가 있을 터이니, 淸한 대로 시행하소서. 淸한 裁결 총 수가 10여 만결을 넘으니, 전에 흉년이 들었 을 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4만 8천결에 한 해 蠲給하고, 事目災 2천결을 아울러 蠲해 5 만 여결을 즉시 配定하고 租案을 속히 마감해 야……”

한 극심한 흉년을 경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877년의 경우 “가청재결” 안에는 9,769결의 舊災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재결”로 인정받고 있다. 이 해는 丙子年(1876년)의 극흉이 남긴 歉荒으로 기록되고 있다.

1876년 이래 문제의 이 17년간은 <부표 1>의 “농형” 추이(『備邊司謄錄』)나 <부표 2> 상의 “급제”액(『度支田賦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년년의 선명한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표 3> 상의 “급제”액이 급제의 최종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가령 1879년에는 영광의 “無亡減稅”條 700결, 1880년과 1882년에는 영광 등 3읍의 “무망감세”조 1,500결 등이 더해지고 있다. 영광에서는 흉년인 1883년에도 전주와 함께 “무망감세”조 930결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결정된 급제액은 각 읍에서 별도로 인정받은 舊災, 無亡減稅條, 限年減稅條, 全數停退條 등이 모두 합산되어 결국 『度支田賦考』 상의 “급제”액에 이르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1878년부터 <표 3>(『年分災實要覽』)의 “급제”액에 丙丁의 舊災 9,769결을 합산하면, <부표 2>(『度支田賦考』) 상의 “급제”액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舊災 9,769결은 사실상 영구 진전화함으로써 향후 호남 연해읍에 있어서 병정의 검황이 남긴 커다란 상처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전술한 <그림 3>(『度支田賦考』) 상에서는 전답별 급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평년의 경우 “畚災”는 “田災”의 4배 가량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흉년이 든 경우에는 “진

표 4 1886年 靈光郡 免稅結 및 收稅實結의 內譯

區分		結負數
元帳簿結數		14,089-22-8束(100.0%)
各樣免稅結	宣禧宮免稅田	283-90-6속
	鄭房宮免稅田	35-91-4속
	司僕寺免稅田	1,284-56-6속
	訓屯免稅田	90-18-6속
	馬位免稅田	79-09-6속
	長急走位元起田	10-00-0속
	驛公須位元起田	5-00-0속
	多慶官垡田	7-35-2속
	校垡田	86-9속
	養士齋垡田	3-6속
	官垡田	3-86-6속
	官屯田	13-07-1속
	官竹田	4-05-3속
	官箭竹田	29-40-7속
	寺垡田	7-05-6속
	船所垡田	48-6속
	社倉垡田	1-81-9속
	竹林書院免稅田	4-52-6속
	壽進宮起畚	60-9속
	於義宮田	119-00-0속
校位起田	5-00-0속	
官衙祿田	40-00-0속	
公須位起田	15-00-0속	
小計		2,040-81-8속(元摠의 14.5%)
陳雜頭結	舊陳田	3,552-67-4속
	今陳田	1,279-88-7속
	己卯陳田(1879)	700-00-0속
	續陳田	19-81-8속
	小計	5,552-37-9속(元摠의 39.4%)
收稅實結		6,496-03-1속(元摠의 46.1%)

자료 : 『靈光郡事例』, 1886.

제”를 2,500결 대에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답제”를 증가시켜가며 급제를 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호남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급제 방식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丙丁의 舊災 9,769결은 1878년 이후 永久 陳雜頭結化하면서 당시의 호남 재정에 커다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의 <표

4>는 호남의 거읍 가운데 하나인 영광의 사례를 통해 免稅結, 陳雜頭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靈光郡事例』(1886)는 1883년 흉년에 따른 3년간의 全數 停退가 완료되면서 그간의 각종 면세결 및 진잡탈결을 정비할 필요에서 작성된 것이다.²⁶

²⁶ 1863년판 『靈光郡事例』 또한 그러하다. 이 경우는 진주민란(1862)의 수습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영광의 결충은 1886년 현재 1만 4천여 결인 가운데, 각양면세결이 2천여 결(14.5%), 진잡탈결 5천여 결(39.4%), 수세실결이 6천여 결(46.1%)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양면세결은 宮房田과 衙門屯田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표 4>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진잡탈결이 결충의 40%에 달함으로써 수세결은 50% 미만에 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술한 나주의 사례(표 2 참조)보다도 높은 수치이다(진잡탈결을 1872년 결충의 24%, 1897년 동 33%). 영광의 사례에 주목하는 한, 나주에서 결충이 1/4 가량 감소한 것도, 당시 대규모 재해에 따른 경지황폐화 즉, 陳田化 현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호남 제읍의 농촌 불안정: 결론에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본문 중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한 가지 논점에 대해 간단히 고찰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호남 제읍에서 발생하였던 地域民亂과 農民戰爭의 배경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1894년 호남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대규모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무엇인가.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 농촌사회는 19세기에 들어서 18세기의 안정기를 뒤로한 채 民亂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 환곡제의 해체, 인구의 정체, 場市의 감

소, 촌락공동체의 해체 등 사회구성상 危機의 징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장기사회변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18세기가 평온하고 낙관적인 확장국면이었다면, 19세기는 그 후반기로 갈수록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가 잇따른 축소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의 연안 제읍에서는 1876년 丙丁의 歉荒 이후 기근과 수해가 만연하는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농민의 궁핍화가 심화되면서 流亡이 속출하였다. 특히, 연안 제읍의 농형 추이를 주목하는 한, 나주, 영광, 영암, 부안 등 호남의 거읍들은 거듭되는 尤甚[우심, 극흉]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농업생산력의 감퇴와 농촌불안정이 누적적으로 심화되는 생존위기의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²⁷

당시 농촌현실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부세정책은 전라도 농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었다. 19세기 후반의 경직적인 부세정책은 제도상의 문란과 지방재정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당시의 민정을 외면하고 있었다. 진주민란(1862) 이후 소강상태였던 민란도, 1880년대 이후 빈발하기 시작해 드디어 1894년에는 ‘東學亂’이라

²⁷ 나주에 대해서는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한말 일제하 나주지역의 사회변동 연구: 심포지엄논문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동양학술회의, 2003. 손병규, 『19세기 나주지역의 재정운영과 권력관계』, 『大東文化研究』44, 2003 참조; 영광에 관해서는 鄭勝振, 『韓國近世地域經濟史—全羅道 靈光郡 일대의 事例—』(景仁文化社, 2003) 참조; 영암에 대해서는 金建泰, 『1743~1927年 全羅道 南平文氏 門中の 農業經營』, 『大東文化研究』 35, 1999 참조.

는 전국적 규모의 농민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농민전쟁의 불씨가 호남 연안 제읍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갔음은 이 지역의民情과 무관하지 않았다. 연해평야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재해, 그로 인한 농업위기와 농촌불안정은 수많은 몰락 농민과 ‘난민’을 양산하면서 이 일대의 농민전쟁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농촌불안정이라는 대내적 모순에 의해 촉발되었던 이 농민전쟁에 의해 조선사회는 향후 격렬한 정치적 격랑에 휩싸이게 되었다.

초래의 사가들은 농민전쟁의 원인에 대해 삼정문란이라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²⁸와 지주-소작간 혹은 부농-빈농간 계급갈등²⁹이라는 생산관계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삼정문란과 계급갈등은 분명 진주민란과 1894년 농민전쟁의 1차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남에서 다발한 민란과 농민전쟁도 기본적으로 19세기 후반 호남 제읍이 안고 있던 사회경제적 제모순의 발현형태임에 주목해야 한다.³⁰ 이것은 제도상의 문란과 계급갈등의 저류를 흐르는 기초구조=생산력구조의 붕괴를 내포하고 있다. 19세기 말로 갈수록 악화되어간 이 일대의 농형과 급제 상황은 당시 지방

재정의 난맥상을 노출하면서 호남 농촌사회의 불안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상, 농형과 급제라는 두 가지 지표를 통해 호남 농촌사회의 경제적 측면을 살펴 보았다. 이 글에서 제시된 ‘농형=급제’ 가설은 이 시기의 사회변동을 보여주는 여러 변수 가운데,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며 예비적인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막 출발한 장기사회변동 연구가 앞으로 수행할 과제는 적지 않다. 우리는 가령 인구변동, 場市변동, 지방재정 상황 등과 같은 매우 기초적인 물음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악화된 농형이 초래하는 미시적 레벨의 농촌사회의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향후 필자의 연구 과제이다.

참고 문헌

- 『各司謄錄』(『全羅監司啓錄』, 『湖南啓錄』)
 『古文書集成27·28—靈光 寧越辛氏篇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年分災實要覽』(奎12207)
 『備邊司謄錄』
 『純祖實錄』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譯註牧民心書』
 『靈光郡事例』. 1886.
 『梧下記聞』
 『度支田賦考』
 『湖南廳事例』(純祖年間)
 金建泰. 1999. “1743~1927年 全羅道 南平文氏門中の 農業經營.” 『大東文化研究』 35.
 金容燮. 1988. 『(增補版)韓國近代農業史研究』[上

²⁸ 대표적인 것으로서 한우근, 『東學亂 起因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송찬섭, 『朝鮮後期 還穀制改革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참조.

²⁹ 대표적인 것으로서 金容燮, 『增補版韓國近代農業史研究』[上·下](一潮閣, 1988); 왕현중, 앞의 논문, 1991. 참조.

³⁰ 대표적인 것으로서 趙珖, 『19世紀 民亂의 社會的 背景』(『19世紀 韓國 傳統社會의 變貌와 民衆意識』,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참조.

- 下] 一潮閣.
- 金泰雄. 1997. 『開港前後~大韓帝國期の 地方財政改革 研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 麻生武龜. 1940. 『朝鮮田制考』. 朝鮮總督府中樞院.
- 문용식. 2000.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景仁文化社.
- 송찬섭. 2002. 『朝鮮後期 還穀制改革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李榮薰, 朴二澤. 2002. “18~19세기 米穀市場의 統合과 分裂 : 靈巖의 米價變動에 대한 生産衝擊의 影響分析.” 『經濟學研究』 50-2.
- 李榮薰, 朴二澤. 2001. “農村 米穀市場과 全國的 市場統合: 1713-1937.” 『朝鮮時代史學報』 16.
- 李榮薰. 1999. “호남 고문서에 나타난 장기추세와 중기과동”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李哲成. 1993. “18세기 田稅 比摠制의 實施와 그 성격.” 『韓國史研究』 81.
- 이호철, 박근필. 1997. “19세기초 조선의 기후변동과 농업위기.” 『朝鮮時代史學報』 2.
- 全成昊. 1998. 『朝鮮後期 米價史 研究(1725~1875)』. 成均館大博士學位論文.
- 鄭勝振. 1998. “19~20世紀前半 農民經營의 變動樣相.” 『經濟史學』 25.
- 鄭勝振. 2003. 『韓國近世地域經濟史』. 景仁文化社.
- 趙 珖. 1982. “19世紀 民亂의 社會的 背景.” (『19世紀 韓國 傳統社會의 變貌와 民衆意識』.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 원고접수일 : 2004년 5월 4일
 원고심사일 : 2004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 2004년 5월 18일

부표 1 19세기 전라도 農形 일람

年度	尤甚	之次	稍實	年度	尤甚	之次	稍實
1801(54)	6	14	34	1846(54)	0	16	38
1802(54)	8	15	31	1847(54)	6	26	22
1803(54)	5	14	35	1848(54)	0	23	31
1804(54)	0	18	36	1849(54)	3	25	26
1805(54)	12	12	30	1850(54)	17	23	14
1806(54)	4	16	34	1851(54)	12	15	27
1807(54)	3	16	35	1852(54)	19	24	11
1809(54)	34	15	5	1853(54)	19	23	12
1810(54)	12	28	14	1854(54)	10	28	16
1811(54)	2	34	18	1855(55)	0	16	39
1812(54)	15	29	10	1856(55)	9	24	22
1813(54)	6	34	14	1857(55)	20	21	14
1814(54)	29	15	10	1858(55)	21	24	10
1816(54)	0	37	17	1859(55)	0	13	42
1817(54)	8	40	6	1860(55)	13	20	22
1818(54)	5	10	39	1861(55)	13	18	24
1819(54)	10	26	18	1862(55)	11	23	21
1820(54)	8	21	25	1863(55)	20	23	12
1822(54)	9	25	20	1866(55)	14	22	19
1823(54)	6	24	24	1870(56)	9	26	21
1824(54)	7	23	24	1871(56)	6	24	26
1825(54)	6	23	25	1872(56)	4	24	28
1826(54)	2	19	33	1873(56)	15	24	17
1827(54)	6	19	29	1875(56)	9	20	27
1828(54)	19	24	11	1876(56)	32	18	6
1829(54)	2	17	35	1877(56)	14	24	18
1830(54)	4	23	27	1878(56)	5	32	19
1831(54)	17	20	19	1879(56)	4	42	10
1832(54)	19	19	16	1880(57)	7	38	12
1833(54)	20	23	11	1881(57)	14	30	13
1834(54)	11	22	21	1882(52)	12	30	10
1835(54)	8	31	15	1883(57)	33	17	7
1836(54)	25	24	5	1884(57)	15	27	15
1837(54)	26	23	5	1885(57)	19	25	13
1838(54)	8	36	10	1886(58)	15	18	25
1839(54)	8	39	7	1887(58)	27	24	7
1840(54)	0	19	35	1888(59)	35	20	4
1841(54)	3	28	23	1889(58)	17	24	17
1843(53)	0	12	41	1890(57)	14	18	25
1844(54)	0	15	39	1891(57)	23	24	10
1845(54)	9	28	17	1892(57)	14	22	21

주: ① 자료 결락분은 1808, 15, 21, 42, 64, 65, 67, 68, 69, 74년 총 10개년.

② 연도 옆 괄호 안의 수치는 당해 호남의 전체 읍수임.

자료: 『備邊司謄錄』

부표 2 湖南의 給災 및 出稅實結數 推移, 1841~1885

단위 : 結

年度	災結(a)	狀請災結(b)	給災(a+b)	田災	畜災	出稅實結數
1841	600	17,700	18,300	4,009	14,291	201,390
1842	800	26,000	26,800	3,926	22,874	192,930
1843	700	10,807	11,507	2,802	8,705	208,346
1844	600	11,400	12,000	2,721	9,279	207,975
1845	800	15,000	15,800	2,691	13,109	204,224
1846	600	11,000	11,600	2,710	8,890	208,486
1847	500	13,800	14,300			205,843
1848	400	12,386	12,786	2,729	10,057	207,435
1849	400	13,746	14,146	2,770	11,376	205,614
1850	600	18,000	18,600	3,179	15,421	201,095
1851	600	16,532	17,132			199,924
1852	400	26,000	26,400	3,071	23,329	190,681
1853	300	23,000	23,300	3,129	20,171	193,557
1854	300	22,000	22,300	3,907	18,393	194,181
1855	50	12,000	12,050	3,157	8,893	204,534
1856	400	13,000	13,400	3,216	10,184	203,190
1857	500	19,000	19,500	4,007	15,493	197,110
1858	400	26,000	26,400	3,876	22,524	190,302
1859	300	18,400	18,700	3,540	15,160	198,309
1860	600	20,000	20,600	3,807	16,793	198,232
1861	300	22,000	22,300	3,867	18,433	196,511
1862	500	23,000	23,500	3,960	19,540	198,311
1863	200	22,000	22,200	3,867	18,333	199,616
1864	200	18,811	19,011	3,858	15,153	202,815
1865	250	19,000	19,250	3,524	15,726	202,628
1866	0	15,000	15,000	2,981	12,019	207,096
1867	0	13,916	13,916	2,959	10,957	208,476
1868	0	12,921	12,921	2,779	10,142	210,551
1869	0	9,860	9,860	2,335	7,525	214,159
1870	0	9,773	9,773	2,309	7,464	215,358
1871	0	9,773	9,773	2,309	7,464	215,952
1872	0	9,773	9,773	2,309	7,464	216,140
1873	0	10,469	10,469	2,309	8,160	215,469
1874	200	12,266	12,466	2,393	10,073	213,476
1875	100	11,769	11,869	2,461	9,408	214,076
1876	2,500	46,500	49,000	2,406	46,594	175,668
1877	150	11,769	11,919	2,333	9,586	212,371
1878	100	13,269	13,369	2,309	11,060	210,927
1879	150	14,469	14,619	2,408	12,211	211,541
1880	0	11,285	11,285	2,562	8,723	215,341
1881	100	15,969	16,069	2,620	13,449	209,720
1882	150	16,284	16,434	2,561	13,873	210,462
1883	400	27,284	27,684	2,305	25,379	199,215
1884	200	17,084	17,284	2,561	14,723	210,765
1885	300	19,464	19,764	2,561	17,203	207,518

주: 표 작성의 편의상 1801~1840년 치는 생략함.

자료: 『度支田賦考』